

# 부 산 지 방 법 원

## 판 결

사 건 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, 범인도피교사

피 고 인 박○○ , 안마시술소 운영  
주거 부산 기장군 ○○읍  
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○○동

검 사 오재현(기소), 채양희(공판)

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 
담당변호사 이기중

판 결 선 고 2012. 7. 24.

## 주 문

1.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,000,000원에 처한다.
2.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3.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.
4. 피고인으로부터 50,000,000원을 추징한다.
5.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○○동 ○○-○○에 있는 '○'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이다.

피고인은 공동실업주 장○○(통합서면과 수괴급 고문), 명의상 업주 허○○와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해 방 10개, 수면실 5개, 탕방, 화장실, 세탁실, 창고, 식당, 아가씨 대기방 등을 갖추어 놓고 백○○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고, 단속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허○○로 하여금 마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.

#### 1.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)

피고인은 장○○, 허○○와 함께 2012. 5. 23. 21:10경 ○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박○○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김○○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, 2008. 4.경부터 2012. 5. 23.까지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들로부터 16~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장○○, 허○○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.

#### 2. 범인도피교사

피고인은 ○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로서 장○○, 허○○와 공모하여 전향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2. 4. 26. 부산 연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자,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2. 5. 초순경 ○ 안마시술소에서 허○○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허○○가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고, 허○○는 그 지시에 따라 2012. 5. 7.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○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허○○로 하여금 ○ 안마시술소를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.

## 증거의 요지

###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1. 양○○, 정○○, 장○○, 송○○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김○○, 백○○, 김○○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

1. 허○○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

1. 박○○, 이○○가 작성한 진술서

1. 수사보고(검사 제출 증거 47번)

## 법령의 적용

#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, 형법 제30조(성매매 알선의 점,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), 형법 제151조 제1항, 제31조 제1항(범인도피교사의 점, 징역형 선택)

### 1. 경합범 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3호, 제50조

### 1. 노역장 유치

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### 1. 몰수, 추징

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,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

#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## 양 형 이 유

[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]

-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
-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
-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
- ○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

[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]

-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, 속칭 카드깡, 탈세, 뇌물 등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
  - 이 사건 범행은,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, 그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, 영업 규모, 범행 기간·수법·태양,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입(증거기록 1242면, 1491면 참조)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
  -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(실형 5회, 집행유예 2회)가 있고, ○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바지사장들이 6차례나 형사처벌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
-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, 수단과 결과,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전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

을 정한다.

관사 서아람 \_\_\_\_\_